사기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업무 상배임·사전자기록등위작·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·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·상법위반·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·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



[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1. 17. 2018고합181]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 1외 3인

【검 사】정대정(기소), 기노성, 이동현, 정정욱(공판)

【변호인】법무법인(유한) 광장 외 1인

【주문】

]

1. 피고인 1

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.

피고인으로부터 344,647,589원을 추징한다.

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, 피고인 1에 대한 각 사기(별지 범죄일람표(3) 중 연번 645, 729, 3132, 3307, 4379, 5812, 13757, 15683, 18994, 19781번)의 점은 무죄.

각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.

2. 피고인 2

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, 나, 다의 1) 및 마 중 별지 범죄일람표(3)-1 기재 부분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,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의 2), 라 및 마 중 별지 범죄일람표(3)-2 기재 부분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.

다만,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, 나, 다의 1) 죄 및 마 중 별지 범죄일람표(3)-1 기재 부분 죄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,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, 피고인 1에 대한 각 사기(별지 범죄일람표(3) 중 연번 645, 729, 3132, 3307, 4379, 5812, 13757, 15683, 18994, 19781번)의 점은 각 무죄.

각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.

3. 피고인 3, 피고인 4

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의 점은 각 무죄.

각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【이유】

]

【이유】

]

【이유】

]

【이유】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